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0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김승수・안철수・박성훈

우재준 · 김예지 · 권영진

최보유 • 서지영 • 정동만

박성민 • 이인선 • 조승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

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

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 도하는 행위

-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금지행위 위반죄) ① 제2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2조의2(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기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

-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 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 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 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행위
-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59조의2(금지행위 위반죄) ①
 제2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신 설>

-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3.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5.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6.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 벌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